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
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외 6인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영태·김영길·박세채·신용하
안주찬·이상호·추은희 의원(7명)

1. 제안이유

출산지원금에 관련된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전면개정을 시행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에 관한 사항 정비

나.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관련 조항 삭제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모자보건법」 제3조의2, 제11조

2) 「지역보건법」 제11조

3)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부서검토: 건강증진과 의견제출(붙임)

다. 기 타: 없음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

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8.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난임(亂妊)”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0. “고위험 임신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임원치료가 필요한 임신부로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신부를 말한다.

제3조(모자·부자보건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부자보건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사업
2.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3.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4. 난임 극복 지원사업
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9. 임신부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
10.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사업
11. 모자·부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4. (생략)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바. (생략)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생략)

②~③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건강증진과

조 례 명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1) 「모자보건법」 제3조의2, 제11조 2) 「지역보건법」 제11조 3) 「지방자치법」 제13조 ☐ 주요 사항 가. 조례명에 관한 사항 정비 나.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관련 조항 삭제 ☐ 검토 결과 가족정책과로 관련업무 이관으로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 이용권에 관련된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 삭제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 등 해당없음	